

조정신청서

신 청 인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공사이행청구 등

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은 선택적으로, 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 전 838㎡ 중 신청인소유의 분묘부분 33㎡(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)가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설치공사를 이행하라, 또는 신청인에게금 27,070,7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성립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1. 당사자의 신분관계 신청인은 20○○. ○. ○. 신청외 ●●●에게 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 전 838㎡(다음부터 '이 사건 토지'라 함)을 대금 ○○○원에 매도하면서 ○왕 전 토지 중 신청인의 선친의 분묘가 있는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ㄷ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33㎡(다음부터 '이 사건 분묘부분'이라고 함)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의 1 매매계약서). 이후 신청외 ⑥⑥는 20○○. ○. ○○.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0,000,000원에 매도하면서 역시 매매목적물에서 이 사건 분묘부분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,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).

2. 피신청인의 의무의 발생

그 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땅파기 작업 및 터고르기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분묘 주위가 무너질 상황에 처하였습니다(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사진).

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는바, 20〇〇. 〇〇. 〇. 피신청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까지 이 사건 분묘 주위에 축대를 쌓아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정하였습니다(갑제3호증 서약서).

3. 축대공사비용

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축대(옹벽)공사를 이행하지 않자, 신청인은 이 사건 분묘 주위에 축대(옹벽)설치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을 뽑아보니, 그 비용이 합계 금 27,070,751원에 이릅니다(갑 제6호증 견적서).

4. 결론

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선택적으로, 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 전 838㎡ 중 신청인 소유의 분묘 부분 33㎡(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)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설치공사를 이행하든지, 또는 신청인에게 축대설치공사대금 27,070,7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

각 매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의 1 내지 6

현장사진

1. 갑 제4호증

서약서

1. 갑 제5호증

1. 갑 제6호증

지적도등본

견적서

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신청서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도 면 (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 전 838m²)

l¬	L			
'				
1				
1				
ㄹ	ㄷ			
		_		
1				
l				
1				
1				
l				
1				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	00년(대	☞소멸/	지효일람표 **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	출 관련	! 법 규	민사조정법		
불복절차 및 기간	·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 터 2주일 이내(민사조정법 제34조)						
비 용	・조정수수료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	
기 타	·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 33690 판결).						

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